

이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 회계과

제정 1996·3·1 조례 제 71호
개정 2000·1·13 조례 제 315호
(이천시여비조례중개정조례)
개정 2004·3·22 조례 제 481호
개정 2008·10·20 조례 제 727호
일부개정 2014·4·10 조례 제1032호
일부개정 2018·5·18 조례 제1396호
일부개정 2022·4·22 조례 제1825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4·22]

제2조(위원의 정수)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5명으로 한다. 다만, 이천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원은 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2·4·22〉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시의회가 선임한다. 〈개정 2018·5·18〉

② 시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5·18〉

③ 위원은 시의회의 의장이 추천하여 시의회에서 선임하며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른다. 〈개정 2018·5·18, 2022·4·22〉

④ 시의회의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18·5·18〉

제4조(위촉기간)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시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5·18〉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① 이천시 소속 상근직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8

· 5·18, 2022·4·22>

② 이천시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 및 시의회 의원의 배우자·자녀·형제·자매는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2·4·22>

제6조(대표위원) ① 대표위원은 시의회 의원인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8·5·18, 2022·4·22>

② 대표위원은 위원회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한 시의회의 출석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개정 2018·5·18, 2022·4·22>

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시의회의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5·18, 2022·4·22>

제7조(결산검사 사항 등) 결산검사 사항 및 절차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8·5·18]

제8조(검사협조)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2>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의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 하여야한다. <개정 2018·5·18>

제10조(수당의 지급)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 중에서 위원에게 별표에 따른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시의회 의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시의회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5·18, 2022·4·22>

② 수당은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한꺼번에 지급한다. <개정 2018·5·18, 2022·4·22>

[제목개정 2018·5·18]

제11조(수당의 계산) 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당의 지급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 검사 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시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이 시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할 때에는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8·5·18, 2022·4·22>

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출장기간을 포함한다. <개정 2022·4·22>

[제목개정 2018·5·18]

제12조(여비의 지급)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별표에 따른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8·5·18, 2022·4·22>

제13조 삭제 <2018·5·18>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13 조례 제315호, 이천시여비조례중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4·3·22 조례 제4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0·20 조례 제7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4·10 조례 제10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5·18 조례 제13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4·22 조례 제18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 <개정 2018.5.18>

검사위원의 수당·여비 지급 기준 (조례 제10조 및 제12조 관련)

| 구 분 | 금 액 |
|-----|---|
| 수 당 | 150,000원/1일 |
| 여 비 |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여비지급 구분표 상 이천시의 경우는 부시장 상당액 |

[별지 서식] (조례 제3조제4항 관련) <개정 2018.5.18>

위 축 장

○ ○ ○

이천시 결산검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귀하를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이천시 의회의장 (인)